

中世國語時期 副詞類 吏讀의 研究

— 《科學事目》과 《詳定科學規式》을 중심으로 —

吳 昌 命*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科學事目》과 《詳定科學規式》의 特征
3. 副詞類 吏讀의 目錄 및 形態分析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국어표기법은 漢字 또는 漢字借用表記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대의 국어표기자료는 借字表記로 된 이두표기자료, 향찰표기자료, 구결표기자료, 어휘표기자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吏讀表記는 한글창제 이후에도 官府文書, 民間文書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이 글은 한글 창제 이후인 중세국어시기에 발간된 《科學事目》과 《詳定科學規式》에 나타나는 吏讀의 副詞形態 목록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독법추정 및 음상, 의미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음상은 중세국어와 당시의 한자의 음과 혼은 물론 근대국어시기의 이두학습서들을 참고하여 추정하며, 의미는 문맥상의 의미와 수식관계를 중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한글 창제 이후의 吏讀形態의 목록은 이두의 보수성으로 인하여 고려시대의 이두자료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이두문의 한문화 경향에 따라 套式化되었고, 심지어는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大典會通》 등의 4대 기본법전의 禮典과 《典律通

* 제주대 국문과 강사

補別編》, 《百憲總要》, 《增修無冤錄》, 《秋官志》 등의 朝鮮 法令集에서 ‘用文字式’이라 하여 일정한 공문서의 격식을 규정하면서 套式化는 가속되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근대국 어시기의 이두문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다. 다만 역사학이나 법사학, 경제사 등에서 당시의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일환으로 이두문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두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은 이두의 용법이나 형태가 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차이를 구명하면 국어사와 표기사연구에 정당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조선시대의公私의 古文書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科學事目》과 《詳定科學規式》의 특징

우리가 참고로 하는 《科學事目》과 《詳定科學規式》은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만송문고 소장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일본이다.¹⁾ 이 자료는 科學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역사학도들에게 요긴한 책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자료가 이두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중세국어시기의 이두문 자료가 영성한 상태에서, 이는 중요한 관찬 자료가 된다. 그리고 비교적 풍부한 이두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科學事目》은 《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는 諸科 중의 文科, 生員進士試 관계 조항의 시행에 따르는 細則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法典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크게 ‘新科學事目’과 ‘舊事目’으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다.

이 책의 表題는 《科學事目》이고, 책머리에 ‘嘉靖三十二年九月日申明前後科學事目’이라 하여 ‘宣賜之記’의 인이 찍혀 있다. 결국 이 책은 嘉靖32년, 즉 1553년(명종8)에 乙亥字로 印出한 것이다.

책의 크기는 30.8×19.3cm로 板式은 四周雙邊, 半郭의 크기는 21.7×14.7cm, 一面 9行, 1行 17字, 上下黑口에 內向三葉花紋魚尾로 되어 있다.

《新科學事目》은 ‘嘉靖三十二年六月二十六日’로 되어 있는 啓目後錄 19目과 ‘嘉靖三十二年八月初二日八月初二日’로 되어 있는 ‘啓目粘連’ 11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啓目後錄’은

1) 이 글의 자료와 해제는 《季刊書誌學報》제9집(1993)에 영인된 《科學事目》과 《詳定科學規式》, 그리고 李東歡(1993), “《科學事目》과 《詳定科學規式》 解題”를 참고하였다.

吏讀을 삭제하였고, '啓目粘連'은 이두문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科擧 試取 許容 與否에 대한 것, 易書에 대한 것, 試場 주위의 警戒에 대한 것, 禁亂에 대한 것, 試紙에 대한 것, 試驗 內容에 대한 것 등 과거에 주의할 사항들을 條目化한 것이다.

《新科擧事目》은 아래의 《舊事目》을 망라하여 종합하되, 수차례 걸쳐 申明된 여러 중복 조목들은 단일조목으로 설정하고, '啓目後錄' 등에 있던 吏讀를 刪去함과 함께 기술을 간명하게 하여 19목으로 정리, 1553년(명종8) 6월에 심연원, 상진을 위시한 의정부, 육조판서, 한성부윤, 예조당상관 등이 모여 議定한 事目에다, 여기에 상응하는 동년 8월 2일자 '啓目後錄' 11목을 첨부하여 동년 9월에 반사한 것으로, '啓目後錄'은 역시 이두를 섞은 상세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舊事目》은 書頭に '曹啓目今辛亥年式年進士生員文科初試時應行節目'이라 한 것으로 보아, 辛亥年(1551년, 명종6) 7월~癸丑年(1553년, 명종8) 3월 사이의 과거 실시에 즈음하여 적용할 세칙을 열거하면서,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弊端을 주의하라는 內容을 자세히 申明한 '啓目後錄'의 集成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試場·試官·易書에 대한 것, 服制式暇를除하는 것, 試場的 亂雜禁止 및 出入制限, 그리고 試場警戒에 대한 것, 救急藥材에 대한 것, 監試에 대한 것, 搜挾과 檢擧에 관한 것, 挾冊 및 被覽에 대한 것, 試紙에 대한 것, 榜目에 대한 것 등 科擧에서 주의할 사항들이다. 연월별로 條目的 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嘉靖 30년(명종6, 1521) 7월 4일 : 18目
 嘉靖 30년 9월 2일 : 13目
 嘉靖 30년 9월 5일 : 1目
 嘉靖 31년(명종7, 1552) 1월 16일 : 26目
 嘉靖 32년(명종8, 1553) 3월 18일 : 14目

이 《科擧事目》에는 당시 과거시행상의 갖가지 弊端들에 대한 規禁의 내용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어 조선중기에 이미 科擧制가 그 시행상 상당한 문란상을 드러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科場挾書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음을 전해 주고 있다.

《詳定科擧規式》은 書頭に 밝힌 바대로 癸丑年(1553년, 명종8)에 分蒐, 申明한 各年の 科擧事目, 즉 《科擧事目》에서 시행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刪改하고 增損하여 총 35목을 설정, '規式'(2目), '試卷'(4目), '製述'(4目), '貢貢'(2目), '講書'(5目), '糾禁'(18目) 등 6門으로 분류, 편집한 것이다. 아쉬운 것은 書頭를 제외하고는 吏讀가 必要하지 않다고 하여 刪去하고 있는 점이다.

책은 不分卷 1冊 12張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문고에 소장되어 있고, 현재 알려진 바

로는 유일본이다. 책의 크기는 29×18.6cm로 板式은 四周雙邊, 半郭의 크기는 21.6×14.7cm, 1面9行, 1行17字, 上下黑口에 內向三葉花紋魚尾로 되어 있다.

책의 表題는 《科擧規式》으로 되어 있고, '宣賜之記'의 印이 있으며, 卷末에는 '嘉靖三十六年十一月二十一日'이라는 規식의 확정 年월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丁巳年(1557년, 명종12) 乙亥字로 印出한 책임을 알 수 있다.

《科擧事目》을 頒賜한 지 불과 4년만에 이것을 釐正한 《詳定科擧規式》을 다시 확정, 頒賜하게 된 것은 《科擧事目》에 신설되어 있는 중국의 제도에서 취해 온 법규들이 우리나라의 관습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吏讀을 섞은 煩瑣한 行文인데다가 條目이 중복, 繁多하여 적용에 입하여 내용의 요령을 얻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詳定科擧規式》의 前文에서 말하고 있다.

3. 副詞類 吏讀의 目錄과 形態分析

副詞類 吏讀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서술어의 의미를 한정하거나 묘사하는 기능을 가진다. 부사류 이두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用良, 更良, 爲等如, 貌如, 絃如, 竝只, 并以, 前亦, 右良, 不冬, 不得, 追乎, 不喻, 次第以, 初亦, 叱分不喻, 乙仍于, 遺道, 無不冬, 新反, 須只, 使不得, 至亦, 除良, 必于, 尤于 등

중세국어 부사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의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사의 의미를 한정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 대체로 이와 같은 성격은 吏讀에서도 동일하나 원래 吏讀文이 불완전한 표기이기 때문에 국어와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중세국어의 부사는 뒤에 보조조사가 붙을 수도 있으나 이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吏讀의 부사는 音假字로 이루어진 것도 있으나, 대개 訓讀字와 音假字²⁾의 복합구성으로 이루어진다. 音假字는 말음첨기로 쓰여 원래 한자가 부사였던 것을 국어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파생접사로 쓰여 원래는 다른 품사였던 것이 부사로 파생된 것이 있다. 전자에는 遺道, 必于, 竝只, 初亦, 前亦 등이 있고 후자에는 更良, 并以, 加于, 爲等如 등이 있다.

2) 이러한 구분은 남풍현(1980)에 따른 것이다.

이두부사도 어떤 성분의 의미를 제한하는 성분부사와 문장전체의 의미를 제한하는 문장부사로 나올 수 있다. 성분부사는 흔히 후행하는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의미관계에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기능을 하는 데 반하여, 문장부사는 그 문장 전체의 의미를 제한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전자에는 ‘并以, 更良, 不冬, 不得, 不喩’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副詞類 吏讀가 여기에 속한다. 후자에는 ‘新反, 初亦’ 등이 있다.

1) 須只 모름즉

‘須只’는 이두학습서에서 ‘모름이(吏集, 吏略),³⁾ 모로미(吏略), 모름지(吏略)’ 등으로 읽었고, 중세국어의 ‘모로매, 모로미, 모로매, 모름이, 모름즉’ 등에 대응한다. 독음상 ‘모로매, 모로미’ 등이 고행일 듯 하나, ‘須’의 훈(須 모로미 수, <類合下>)과 부사형성접사 ‘只’(기, -기)를 고려할 때 ‘모름즉’ 정도로 읽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의 ‘모름지기’에 해당하며, 의미는 ‘모름지기, 반드시, 마땅히’ 정도가 된다. 자료에선 ‘須只 ~爲 -’의 구성만 나타난다.

場屋段須只嚴肅爲白良沙庶無奸僞之弊是白沙餘良滲入場中自有禁令爲白去乙 / 場屋은 모름지기 嚴肅하여야 이에 奸僞의 弊端이 없을 뿐 아니라 場中의 나아가서 滲入을 저절로 禁令할 수 있거늘. (事目 24기)

모로매 미리 약도 머그며 방법 허야 마그라(須預服藥及爲法術以防之) (분문 1)

비홀 사르미 모로미 문져 이러뵈 혼 이롤 업시하야(學者는 須先除去此等이오) (번소 8:18)

모름즉 설위 말고 곳자은 때물 원흐느라(不須憫愍怨芳時) (태평 1:14)

2) 新反 식로이

‘新反’은 이두학습서에서 ‘식로이(典吏2 儒胥), 식로히(羅麗), 새로이(吏大, 典吏1)’로 읽었고, 독음은 중세국어의 ‘새로이, 새러, 새로’에 해당하나 의미는 일치하지 않는다. ‘新’은 훈(新은 새라, <訓諺>. 新 새 신, <유합 상 11>)을 차자했으나 ‘-反’은 풀기가 어렵다. 혹 ‘反’은 파생형용사 ‘새롭-’의 ‘-ㅂ’ 표기를 나타낸 것인지 모른다. 즉 ‘反’의 홑 초성을 이 표기에 썼거나 ‘反切’의 뜻으로 이 표기를 썼을 수도 있다. 그러나 ‘-反’이 ‘-ㅂ’ 표기나 다른 표기로 쓰인

3) 근대국어시기의 이두학습서의 약호는 오창명(1993)에 따른다.

것을 찾을 수 없기에 단정할 수는 없다. 의미는 '- 이기는 커녕 오히려, - 보다 오히려, 보다도 더욱, 도리어, 반대로' 정도이다. 자료에선 '新反~爲-'의 구성만 나타난다.

入門時看面授受乙仍于入場儒生等小小抄集以乎新反多軼大全書冊乙無不持入披覽場屋之中有同書肆爲白乎矣 / 入門時 看面 授受하므로 入場儒生들이 小小抄集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多軼의 大全書冊을 無不持入하여 場屋에서 披覽하는 同書를 肆하오되. (事目 22ㄴ)

네 사귀는 쓰는 것대 오히려 새로이 호노노(交情何尙新) (두해 초 9:23)

3) 更良 가시아(가시여)

'更良'은 근대의 이두학습서에서 '가시아(更文1, 吏大), 가시여(典吏3), 가시아(典吏1, 儒胥)' 등으로 읽고 있다. 중세국어에 '가시아, 가시여'에 대응하며, 광주판 《千字文》(24ㄴ)에 '更 가실 김'이라 한 것을 보면 '가시아, 가시여' 정도로 읽을 수 있다. 구성은 '更'의訓인 '가식다'의 동사어간에 부사형성접사 '良'(-아어)가 통합된 것이다. 의미는 '다시(는), 재차, 또 다시, 그 위에' 정도이다. 자료에선 '更良~爲-'의 구성만 나타난다.

可以推行條件乙良更良磨鍊後錄爲白去乎依後錄使內白乎矣 / 推行할 수 있는 條件은 다시 마련하여 後錄하오니 後錄에 따라 시행하게 하오되. (事目 5ㄱ)

京中 試講不通儒生段近道都會外方不通儒生段京中 講所遠方段置各其相近都會良中更良濫赴無不冬爲白昆 / 京中の 試講에서 不通級の 儒生은 近道 都會에서, 外方の 不通級の 儒生은 京中에서, 講所가 遠方인 사람도 각기 相近都會에서 다시 濫赴하지 못하게 하는데. (事目 10ㄱ)

가시아 幽深한 짜홀 스쳐 도로 北 녀 城郭에 사는 사름물 차자 오라(更想幽期處還歸北郭生) (두해 초 9:11)

나조히 뵈히 가시여 프르도다(晚來山更碧) (두해 초 7:24)

4) 不冬 안돌

'不冬'은 '안돌, 안들(吏大, 典吏3)로 읽히며 '아니(하다), 안(하다)'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중세국어의 부정부사 '아니, 안들'에 대응한다.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동사적인 기능까지 담당하고, 뒤에 동사를 수반할 때는 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不冬'은 '不'의 훈차이며 '冬'은 말음을 나타낸 것이다. 口訣文에서 고려시대까지 '안' 부정형으로써, '不冬'은 동사부정에 '不諭'

는 명사부정에 쓰였으나, 史讀에서는 조선시대까지 쓰였다. 한편 동사의 ‘안’ 부정형으로 ‘不冬’과 동사의 ‘못’ 부정형으로 ‘不得’이 쓰이는데, 그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不冬’의 통합환경을 보면, 단독으로 쓰일 경우(事目 24-)와 ‘不冬爲白在/안돌흐숭견(事目 36-), 不冬爲白在亦中/안돌흐숭견다히(事目 38-), 不冬乙仍于/안돌을지즈루(事目 41-), 不冬叱分不喩/안돌쑤안다(事目 22-), 不冬絃如爲白昆/안돌시우려흐숭근(事目 19-), 無不冬爲白昆/업스론안돌흐숭근(事目 10-), 無不冬爲白置有良尔/업스론안돌흐숭두이시아곰(事目 45-)’ 등이 나타난다.

摘發不冬四館士官長等乙各別罷職亦爲白有昆依右例使內白 / 摘發 하지 못한 四館의 士官들을 특별히 罷職하라 하였는데 위의 例에 따라 행하도록 할 것. (事目 27-)

用意搜檢不冬者乙良推考重論 / 用意하게 搜檢을 못한 자는 推考하여 重論할 것. (事目 30-)

監試京官無亦前後事目乙用意舉行不冬絃如爲白昆 / 監試는 京官이 없이 前後事目을 用意하게 舉行을 계속 못하였대. (事目 33-)

불휘 기픈 남근 부르매 안니 뿔식(根深之木 風亦丕机) (용가 1:1)

不 안득 불 (光千 12), 非 안득 비 (훈몽 하29)

5) 不喩 안디

‘不喩’는 ‘안디(吏文, 吏大), 아닌디(典吏)’로 읽히며, 명사부정에 사용되어 ‘(뿐만) 아니라’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주로 ‘叱分不喩’의 형태로 나타난다. 중세국어의 부정부사 ‘아니, 안득’에 해당한다. ‘不喩’는 뒤에 오는 어미가 흔히 생략되므로 문맥에 따라 보충해서 해석해야 한다. 자료에서는 ‘叱分不喩~爲-’의 구성만 나타난다.

故爲不見立法後無一人摘告叱分不喩所帶所由等狠濫尤甚 / 故로 不見立法한 후 一人도 摘告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所帶 所由들이 狠濫이 더욱 심하다. (事目 13-)

近來檢舉陵夷搜挾官等用心搜挾不冬叱分不喩所知儒生等書籍冊袱乙先自持入爲自有如可 / 近來 檢舉가 陵夷한 搜挾官들은 用心하게 搜挾하지 못할 뿐 아니라 所知儒生들의 書籍 冊袱를 먼저 持入하였다가. (事目 22-)

搜挾官等只不得下手搜檢叱分不喩試官設置不勝禁抑爲白平塚 / 搜挾官들이 搜檢에 착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試官도 禁抑을 不勝하였으며. (事目 31-)

6) 貌如 쫘다(쫘다이)

‘貌如’는 ‘쫘다(吏大, 儒胥), 쫘(吏集)’이라 읽히며, ‘그대로, 모양(모습, 형태)대로, 취지대로’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중세국어에 비추어 볼 때 '如'는 '다비, 다이' 정도로 읽을 수 있다. '貌'의訓(貌 貌 俗稱模樣 又曰樣範…, <훈몽 상24>)과 부사형성접사 '如'(다비, 다이)의 혼합구성으로 이루어졌다. 수식구조상 부사역할을 하는데, '如'의 영향으로 해석상 특수조사 '같이, 대로, 처럼'의 의미처럼 해석된다. 자료에선 '貌如~爲'의 구성을 보인다.

이두합서에서 '貌如'는 '가로혀(儒書, 吏略), 가로혀, 가르여(吏略, 吏集)' 등으로도 읽었는데, 이는 '伎如, 伎等如'의 讀音과의 혼동인 것으로 보인다.

試講時常時錄名貌如出入無檢講問不嚴爲自在如中 / 試講時 常時 錄名대로 出入 無檢하여 講問하는 것을 不嚴하였는데. (事目 7ㄴ)

並令相考亦爲白昆右良承傳貌如申明學籍之令式爲 / 아울러 相考하라 하는데, 위의 承傳대로 申明하고 學籍대로 시행한다. (事目 9ㄴ)

7) 右良 임의여(이미여)

'右良'은 '님의여(典吏, 2), 니뫼여(吏大), 임의여(吏語)로 읽히며, '위와 같이, 위의 내용과 같이, 上記한' 혹은 글자의 뜻대로 '오른쪽에 적은 글이나 내용과 같이'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右'의 현대훈에 '오른쪽'과 '위, 위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둘은 同義關係에 있는 것으로 본다. 다른 문헌에선 '右如'도 나타난다. 독음은 중세국어의 '임의, 이미'(既)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료에서 '右良~爲', '右良 使內-'의 구성이 나타난다.

並令相考亦爲白昆右良承傳貌如申明學籍之令式爲 / 아울러 相考하라 하였는데 위에 承傳한 대로 申明하고 學籍의 式대로 행한다. (事目 9ㄴ)

搜挾後入門時面給無不冬爲白昆右良使內如可現露人乙良道這推考罷職 / 搜挾後 入門時에 面給이 없지 않아서 위내용과 같이 행하게 하다가 現露人은 신속히 推考하여 罷職할 것. (事目 24ㄴ)

印布中外爲當是如爲白臥平等用良右良釐正條件啓目後錄爲白去乎移文司憲府司諫院署經後五百六十件印出 / 中外에 印布함이 당연하다고 한 것으로써 위의(상기) 釐正한 條件啓目은 後錄하는데 移文을 司憲府와 司諫院이 署經한 후 오백 육십건을 印出할 것. (規式 2ㄴ)

8) 追乎 조초

'追乎'는 '조초(羅吏)'라 읽히며, ① 좃아서, 따라서, 과정을 밟아 ② 이 다음에(추후에), 나중에'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중세국어의 파생부사 '조초(隨), 조차(從)'에 대응한다. 다른 문헌

에서는 ‘追于’가 나타나며(조초, 吏文, 吏大), 동일한 위치에 한자어 ‘追後’가 나타나기도 한다. 근대국어시기의 이두문에 올수록 ②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京中 試講不通儒生段近道都會外方不通儒生段京中講所遠方段置各其相近都會良中更良
濫赴無不冬爲白昆初呈成案外追乎願試人乙良一切勿試以杜奸濫之弊 / 京中の 試講
에서 不通級の 儒生은 近道 都會에서, 外方の 不通級の 儒生은 京中에서, 講所가 遠
方인 사람도 각기 相近都會에서 다시 濫赴하지 못하게 하는데, 初呈成案 外를 쫓아
서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一切 勿試함으로써 奸濫之弊를 막는다. (事目 10ㄱ)

그 근본을 傷하면 가지 조차 업니라(傷其本이면 枝從而亡이라) (소해 3:1)

그 가운데 구름 氣運이 누는 龍을 조초 잇도다(中有雲氣隨飛龍) (두해 초 16:31)

다하지 못한 조건은 조초 마린 亨을져(未盡條件追于磨鍊爲白齊) (자훈 9ㄴ)

9) 并以 아오로

‘并以’는 ‘아오로’(吏文, 吏大, 典吏)로 읽히며, ‘아올러, 함께, 모두’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并’의 訓(并 아올 병, <신합 하48>. 並 아오다 ... 又兼하다, <동해 하58>)과 부사형성접사 ‘以’(로)가 결합한 구성이며, 중세국어의 파생부사 ‘아오로’(并)와 대응한다. 자료에선 ‘并以~爲 -, 并以~使內 -’의 구성이 나타난다.

聽其私囑陳省 成給守令及都會入門乙良罷職經二年乃被試官并以推論爲白乎矣儒生乙良
推考停二舉 / 그 私囑을 들어서 陳省狀을 成給한 守令 및 都會 入門官은 파직하고,
二年을 경과하여 차례를 준 試官을 아울러 推論하오되 儒生은 推考하여 停舉할 것.
(事目 17ㄱ)

前矣行用事目 至爲詳盡爲白昆并以參用爲白只爲各道良中騎上等乙用良行移知會舉行何
如 / 전에 行用事目은 至爲하게 詳盡하므로 아울러 參用하도록 하기 위하여 各道에
騎上들을 써서 行移를 知會하여 舉行함이 어떻습니까? (事目 28ㄴ)

試官及各差備學子等乙良依前例除服制式假推考人員并以使內白 / 試官 및 差備學
子들은 前例대로 服制 式假를 면제하여 推考한 人員을 아울러 쓰게 할 것. (事目 50ㄴ)

아순과 國王과 ... 居士와 아오로 외화(并會親族과 國王과 ... 居士하야) (법화 2:222)

10) 並只 다므기(다므기)

‘並只’는 ‘다므기’(吏文, 吏大), 다목기(典吏1, 2), 다모기(羅吏, 吏樣)로 읽히며, ‘모두, 함께, 더

불어'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중세국어의 '다뭇(共, 與), 다므기(竝), 다뭇(與)'에 대응한다. 중세 국어를 통해서 볼 때, '다뭇기, 다므기' 정도로 읽을 수도 있다. '并以'의 의미가 유사하다. 자료에선 '並只~使內, 並只~爲'의 구성이 나타난다.

試期當次爲白去等委遣京官乙並只曾經侍從臺諫人員以擇差兼帶臺御使內白乎矣 / 試期가 當次하거든 京官을 委遣하고, 모두 이전에 겪었던 侍從 臺諫人員으로 擇差하여 臺御를 兼任하도록 하오되. (事目 12ㄱ)

陳省成給守令是白沙餘良試官入門官等乙並只推考啓聞罷黜 / 陳省狀을 成給한 守令뿐만 아니라 試官 入門官들을 모두 推考하여 啓聞하고 罷黜할 것. (事目 22ㄱ)

搜挾時只依法搜括勿令狎辱爲白只爲並只依承傳施行何如 / 搜挾時 다만 法대로 搜括하여 狎辱하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모두 承傳대로 施行함이 어떻습니까? (事目 37ㄱ)

술 혼 서발 다뭇 주리라(共給酒一斛) (두해 초 25:4)

某1 다므기 일췌 抵敵디 아니호엿느니(某竝不曾抵敵) (박해 하:54)

11) 必于 비록(비록)

'必于'는 '비록(備筭, 비록(吏集, 吏略))'으로 읽히며, 부사 '비록'을 나타낸 것이다. '必'과 '于'의 音借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세국어의 '비록(雖)'에 대응한다. 자료에선 '必于~爲'의 구성만 나타난다.

或應避勿入者冒赴人乙良必于所製中格爲白良置不取爲白乎矣 / 혹시 應避勿入者로서 冒赴한 사람은 비록 所製하여 中格하여도 不取하오되. (事目 26ㄴ)

有時特命數是旆必于給分爲白良置亦得計劃參試爲白去等 / 때가 있을 때마다 特命 하셨으며, 비록 給分하여도 또한 計劃을 세워 參試하거든. (事目 34ㄴ)

外方 試場段防禁頓無必于申明累次知會爲白良置監試京官無亦前後事目乙用意舉行不冬絃如爲白昆 / 外方 試場은 防禁이 頓無하여, 비록 申明하여 累次 知會하여도 監試는 京官이 없이 前後事目을 用意하게 舉行을 계속 못하였는데. (事目 33ㄴ)

漢 德이 비록 衰호나 帝肖 | 中興호시립시(漢德雖衰帝肖中興) (용가 5:5)

12) 尤于 더욱(더욱)

'尤于'는 '더욱(典吏1, 2), 더욱(吏大, 吏便)' 등으로 읽으며, '더욱, 오히려 더, 점점 더'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訓讀字인 尤(尤 더욱, <倭 상27>)와 부사형성접사 '于'의 구성으로 이루어

어진 것이다. 중세국어의 '더욱, 더욱(尤, 益, 愈, 彌)'에 대응한다. 다른 형태인 '加于'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료에서 '尤于~爲-'의 구성만 나타난다.

能寫人使之代書爲白臥乎所尤于猥濫爲白昆今後 吏胥貢生雜類非當身赴舉者一切痛禁使不得濫入爲白乎矣 / 能使人으로 하여금 代書하는 바 더욱 猥濫하는데, 今後 吏胥 貢生 雜類인 非當身 赴舉者는 一切 痛禁하여 부러서 濫入 못하도록 하오되. (事目 24ㄴ)

魯와 衛에 더욱 尊重하시니(魯衛彌尊重) (두해 초 8:14)

글 이품 조조 학물 모로메 期約하야 나그내 시르미 얼의여슈물 더욱 혜튜리라(會期吟瀾數益破旅愁凝) (두해 초 20:23)

13) 惠伊 저즈리(저즈리)

'惠伊'는 '저즈리(吏文, 吏大, 典吏), 저즈리(吏牒, 吏集)'로 읽히며, '두루, 널리, 고루, 골고루, 공평하게'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惠'의訓 중 '*저절다' 정도의 어간을 상정할 수 있을 듯 한데, 중세국어에서 확인할 수 없다.

年少迷劣人除良令兵曹每一所各四十員式惠伊擇定場屋中門外分 / 年少迷劣人은 제외하고 兵曹로 하여금 一所마다 各 四十員씩을 골고루 擇定하여 場屋中의 門外에 分할 것. (事目 39ㄴ)

14) 前亦 전여(전혀)

'前亦'는 '前矣/전의'와 다른 부사형에 전주어 볼 때 '전여, 전혀'로 읽힐 수 있으며, '먼저, 우선'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이두학습서나 이두사전에서 취급되지 않은 형태이다. 訓讀字 '前'과 부사형성접사 '亦'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료에선 '前亦~爲白乎矣'의 구성만 나타난다.

外則試場都會官良中試官初赴未入場前亦依前規式試講爲白乎矣 / 地方의 試場은 都會官에서 하되, 試官이 初赴하여 未入場하면 먼저 前規式에 의하여 試講하오되. (事目 8ㄴ)

15) 初亦 초여(초혀)

‘初亦’은 ‘초허(吏文, 吏機), 초여(羅吏, 吏便)’ 등으로 읽히며, ‘처음의(에), 처음으로, 먼저’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音讀字 ‘初’와 부사파생접사 ‘亦’의 복합구성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문헌에선 ‘初如’의 형태도 나온다.

檢舉事段至爲詳密爲白在果初亦事目內試場檢舉 監察乙門外二員場內二員差送亦爲白有去乙 / 檢舉하는 일은 지극히 詳密하게 하거나 처음의 事目 안에 試場檢舉는 門外 두 사람, 場內 두 사람을 差送하라 하였거늘. (事目 13ㄱ)

癸丑年印頒事目乙良初亦頒賜分上件數相考知委遷收勿令有前後科條混施之弊何如 / 癸丑年 印頒한 事目은 처음에 頒賜하여 分上한 件數를 相考 知委하여 遷收하고 前後科條를 混施하는 폐단이 있는데 못하게 함이 어떠합니까? (規式 3ㄱ)

16) 至亦 니틀여(니르허)

‘至亦’은 ‘니틀여, 니르허, 니르허’로 읽히며, ‘-을 거느려, 수반하여, -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근대국어시기의 이두학습서에서는 그 형태와 독음을 볼 수 없으며, 《吏略》에는 ‘니르려, 이르여’, 《吏集》에는 ‘일으려’라고 읽었는데 현대화된 독법이다. 중세 국어의 ‘至’의 韻이 ‘니를다, 니를다’이고, 이의 부사형으로 ‘니르허, 니르허’ 등이 나타나므로 (그리고 다른 부사형의 ‘亦’의 독음을 참고할 때), ‘니틀여, 니르허, 니르허’ 정도로 읽을 수 있다. 의미는 중세국어의 그것들과는 좀 다르다. 訓讀字 ‘至’와 부사파생접사 ‘亦’의 복합구성으로 이루어졌다.

近來 檢舉欠嚴朝士及宰相朝官子弟士豪儒生入場者隨從人至亦率入以致場中亂雜此分不啻生員進士試段易書不冬不無兼取書字之意是白去乙 / 近來 檢舉가 欠嚴한 朝士와 守舍의 應舉人 및 宰相과 朝官 子弟와 士豪儒生의 入場者는 隨從人에 이르기까지 率入하여 場中에 잡어들임으로써 亂雜할 뿐만 아니라 生員進士試는 易書하지 않고 書字를 兼取함이 없지 않거늘. (事目 24ㄱ)

年受 教乙良置設弊敘事不緊助辭吏讀至亦不遺一字體寫印出文字條件數多重複領略未易乙仍于印頒未幾人多異議隨事 / 各年の 受教도 設弊를 敘事하여 緊요하지 않은 助辭 吏讀에 이르기까지 한 字도 남기지 않고 體寫 印出하고 文字條件이 수다히 重復된 것은 領略하여 未易하므로 印頒하여 오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일마다 이의를 제기한다. (規式 1ㄴ)

거문고 노로물 이저 니르허 帝子물 슬노니(戲瑟至今悲帝子) (두해 초 11:7)

어린 제부터 늙음에 니르허 슬호여 후디 아니하며(自幼至老主厭不改) (소해 5:9)

17) 絃如 시우려(시우려)

‘絃如’는 ‘시울어, 시우려(典吏1, 吏棟), 시우려(吏文, 典吏2)’로 읽히며, ‘계속(하여), 연달아, 이어서’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문장 해석상 ‘絃如’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나 추측을 표현하는 선행 내포문을 받아 母文에 종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未完 또는 推測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박성종:1987)과 ‘때문에, 까닭에’의 뜻이 있다(안병화:1983)는 지적은 재고되어야 하며, <吏集>의 해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訓讀字 ‘絃’(絃 시울 현, <신함 하13>)과 부사파생 접사 ‘如’의 복합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絃’은 ‘弦’과 같은 字이다. ‘絃如’는 ‘絃’의 訓인 ‘시울(줄)’에서 ‘줄줄이’ 정도의 의미가 파생되었거나 ‘絃’의 訓으로 ‘계속하다’와 같은 뜻을 가진 ‘*시울다’ 정도의 동사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직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료에선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확인되지 않고 ‘絃如 爲-’의 구성만 나타난다. ‘絃如爲白昆/시우려하숄곤(事目 7ㄴ), 不得絃如爲白昆/모달시우려하숄곤(事目 10ㄴ), 不冬絃如爲白昆/안달시우려하숄곤(事目 33ㄴ)’ 등.

分二廳隔帳科次爲自在如中試官多寡不等均一分廳不得絃如爲白昆 / 二廳에 나누어 隔帳하고 科次하는데, 試官이 多寡가 不等均하여 한결같이 分廳을 계속 못하는데. (事目 10ㄴ)

數多 儒生乙日晚始入爲白乎第亦中終始如一搜挾爲難絃如爲白昆式爲夜半爲始入門爲白乎姊 / 數多한 儒生이 日晚하면 始入하는데 終始如一하게 搜挾하기가 계속 어려워 式에 의지하여 夜半이 되어야 비로소 入門하며. (事目 23ㄴ)

錄名日期乙預定不冬爲自在如中覆試前未及畢講絃如爲白昆預先錄名 / 錄名日期를 預定하지 못하였는데 覆試 前에 未及하여 畢講을 계속 하는데 미리 우선 錄名할 것. (事目 37ㄴ)

外方 試場段防禁頓無必于申明累次知會爲白良置監試京官無亦前後事目乙用意舉行不冬絃如爲白昆 / 外方 試場은 防禁이 頓無하여, 비록 申明하여 累次 知會하여도 監試는 京官이 없이 前後事目を 用意하게 舉行을 계속 못하였는데. (事目 33ㄴ)

18) 不得 모달(모질)

‘不得’은 ‘모달(典吏3), 모질(吏文, 吏大, 典吏1)’로 읽히며, ‘못(하다), 하지 못(하다)’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동사부정에 나타나며, 중세국어의 ‘不能’을 뜻하는 부정부사 ‘물(莫, 不得, 不)’에 대응한다. 중세국어의 訓을 고려할 때, ‘물실’ 정도로 읽을 수도 있다. ‘不得下手/모달하슈’와 같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不得爲-, 不得~爲-’의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문

현에선 '下手不得/하슈모달'로도 나타난다. 자료에선 '不得爲白只爲/모달히슌기삼(事目 51ㄱ), 不得爲白乎喻良置/모달하슌은디라두(事目 34ㄴ), 不得爲只爲/모달히기삼(事目 19ㄴ), 不得爲只爲使內白乎矣/모달히기삼브리슌오되(事目 44ㄱ), 不得絃如爲白昆/모달시우려히슌곤(事目 10ㄱ), 使不得~爲白乎矣/브리모달~히슌오되(事目 24ㄴ)' 등이 나타난다.

分二廳隔帳科次爲自在如中試官多寡不等均一分廳不得絃如爲白昆 / 二廳에 나누어 隔帳하고 科次하는데, 試官이 多寡가 不等均하여 絃如같이 分廳을 계속 못하는데. (事目 10ㄴ)

搜挾官等只不得下手搜檢此分不諭試官段置不勝禁抑爲白乎旋 / 搜挾官들이 檢擧에 着手하지 못할 뿐 아니라 試官도 禁抑을 억누를 수 없으며. (事目 31ㄴ)

不禁挾冊未便爲白置科場例設禁不得爲白乎喻良置開試日令正錄官員東西邊各二員定體書冊被覽儒生乙痛加伺察犯者這這黜試 / 不禁挾冊이 未便하여도 科場의 體例를 設禁하지 못하더라도 開試日에 正錄官員으로 하여금 各 두 사람을 定體하여 書冊被覽儒生을 痛加 伺察하여 犯者는 신속히 黜試할 것. (事目 34ㄴ)

平生그를 문 일우시니(莫逢素志) (용가 2:15)

마를 사디 문흐로다(是買不得馬) (박번 상:64)

19) 這這 곤곤(古古)

'這這'는 '곤곤(吏文, 吏大), 古古(典吏1, 2)'으로 읽히며, '신속히, 빨리, 즉시, 곧'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這'를 '곤'으로 읽는 것은 분명하지 않으나, 國音字로 추정된다(這 古, <新字典>). 중세국어의 '곧, 방금'을 의미하는 '古'(繼)의 결합으로, '급함'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오창명:1993). 특히 <大明律直解>에서는 한자어 '就便'의 대역어로 쓰였고, 근대국어시기의 많은 이두문에서 '這這'가 쓰일 동일한 위치에서 '즉시'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 '登時'가 쓰이고 있음은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 음상이 비슷한 '物物'(갓갓)과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심지어는 <이조어사전>과 <이두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자료에선 '這這~爲-'의 구성만 나온다.

搜挾後入門時面給無不冬爲白昆右良使內如可現露人乙良這這推考罷職 / 搜挾後 入門時 面給이 없지 않아서 위의 내용과 같이 행하다가 現露人은 신속히 推考하여 罷職할 것. (事目 24ㄱ)

不用心痛告者乙監試官以這這從重論決後移文本曹苦役最甚爲自在冰夫定體以懲其慢爲白乎矣 / 不用心痛告者를 監試官으로 신속히 從重論決한 後에 本曹에 移文하고, 苦役이 最甚한 冰夫를 정하여, 밖으로 그 방중을 懲戒하오되. (事目 14ㄱ)

四館 官員只交親儒生等矣請囑聽從書冊潛給者果搜挾官等潛持書冊傳授儒生乙這這
執捉傳報法司爲白乎姪 / 四館官員이 交親儒生들의 請囑을 聽從하여 書冊을 潛給한
者와 搜挾官 등의 潛持한 書冊을 傳授한 儒生을 신속히 執捉하여 法司에 傳報하오
며. (事目 41ㄱ)

잘못하는 고적이와 잘못하는 것이미는 고곳 경칙호오되(不善饋粥之庫直不善飼乳
之女人這這警責爲白乎矣) (자훈 8ㄱ)

20) 次第以 차례로

‘次第以’는 ‘차례로’로 읽히며, ‘차례로, 순서대로’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차례, 순서’의
뜻을 가진 ‘次第’와 부사파생접사 ‘以’의 복합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每所實郎 廳一員假郎廳二員式羅將三十名率領左右邊排立分所冊次第以整齊入門爲白乎
矣 / 每所에 實郎廳 한 사람, 假郎廳 두 사람이 羅將 三十名을 率領하여 左右邊에
排立 分하고, 所冊을 차례로 整齊하여 入門하오되. (事目 21ㄱ)

試官 及四館官員亦分所冊次第以箇箇呼名入門不冬各以所知或因請囑抽出呼名入門至爲
泛濫爲白昆 / 시관 및 四館官員이 分所한 冊 차례로 箇箇 呼名하여 入門하지 않고,
각각 所知로, 혹은 請囑으로 인해서 抽出 呼名하여 入門하는 것이 지극히 泛濫하는
데. (事目 44ㄴ)

21) 乙仍于 을지즈루

‘乙仍于’는 ‘을지즈루(吏文, 吏大), 을지즐우(吏文, 吏禮), 을지즈루(羅麗)’로 읽히며, ‘-으로
因하여, -으로 말미암아, -을 까닭으로, -을 탓으로’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音假字인 ‘을’
과 訓讀字인 ‘仍’(지출다), 그리고 부사형성접사 ‘于’가 결합된 구성이다. 중세국어의 부사 ‘지
즈로, 지즈루(仍, 因, 遂)’에 대응한다. 주로 ‘乙仍于’ 형태로 나타나지만 ‘仍于’만 나타나기도
한다. 자료에선 ‘乙仍于~爲-, 不冬乙仍于~爲-’의 구성이 나타난다.

儒生 所挾抄集乙先自收合藏于懷袖之內乙仍于被摘儒生百無一二奸巧難防至於此極爲白
昆 / 儒生이 所挾한 抄集을 우선 스스로 收合해서 懷袖속에 숨기므로 被摘 儒生은
일마다 한 둘이 아니며 奸巧가 難防하여 이같이 極에 달하였는데. (事目 14ㄱ)

監試 段易書不冬乙仍于儒生等名紙乙競尙侈美至用咨文表紙以致紙價翮貴爲弊不侖爲白
昆 / 監試는 易書를 못하므로 儒生들이 名紙를 競尙하여 侈美하는데, 咨文表紙를 至
用하여 紙價가 翮貴하게 하는 폐단이 있어 不侖한데. (事目 41ㄴ)

머브리 브터슈메 지즈로 비발 시름호야(淹泊仍愁虎) (두해 초 7:10)

여러 톨 지르루 버리 여회어쇼니 患難 하매 便安히 사디 몬호소라(積年仍遭別
多難不安居) (두해 초 8:42)

22) 爲等如 히트러

‘爲等如’는 ‘히트러(吏文, 吏大), 히트러(典吏1, 2), 히트러(羅麗, 吏祿)’로 읽으며, ‘모두, 함께’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아직 ‘爲等如’의 독음과 의미의 관계를 명확히 구명하지는 못했다. 다만 중세국어의 ‘이트렛’의 ‘트렛(等)과 관계가 있음 것이란 추정만 할 뿐이다. 주로 ‘爲等如 ~爲-’의 구성이 나타난다.

每所易書忠贊術忠順衛乙良兵曹書吏乙良吏曹爲等如依前例定送 / 每所의 易書로, 忠贊術 忠順衛는 兵曹가, 書吏는 吏曹가 통합해서 前例대로 定送할 것. (事目 18ㄴ)

場中棘圍及懸題板繕工監汲水瓮工曹汲水奴子掌樂院爲等如前期進排定送 / 場中の 棘圍 및 懸題板 繕工監 汲水瓮은 工曹가, 汲水奴子는 掌樂院이 함께 기일 전에 進排하여 定送할 것. (事目 19ㄱ)

試取榜目乙四件成績 … 一件乙良司憲府一件乙良四館爲等如分送爲白良在等各其所上道及三司互相檢考曹入人等乙摘發啓推停學 / 試取榜目を 四件 成績하여 … 一件은 司憲府에, 一件은 四館에 함께(같이) 分送하거든 제각기 上道 및 三司는 互相 檢考하여 曹入人들을 摘發 啓推하여 停學할 것. (事目 26ㄴ)

23) 無亦 업스여

‘無亦’은 중세국어를 통해서 볼 때, ‘업스여, 업스려’ 정도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대 이두학습서에서는 ‘어오른건이여(吏大), 업스른건이여(吏祿, 吏略), 어오이여(儒胥, 吏略)’ 등으로 읽고 있다. ‘없이, 없어서, 없는 상태로’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訓讀字인 ‘無’(無는 업쓰려라, <訓讀註解 14>)와 부사형성접사 ‘亦’의 복합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료에선 ‘無亦~爲-’의 구성이 나타난다.

外方 試場段防禁頓無必于申明累次知會爲白良監試京官無亦前後事目乙用意舉行不冬 絃如爲白昆 / 外方試場은 防禁이 頓無하여, 비록 申明하여 累次 知會하여도 監試는 京官도 없이 前後事目을 用意舉行을 계속 못하였는데. (事目 33ㄱ)

24) 無不冬 업스론안들

‘無不冬’은 ‘업안들’ 혹은 ‘어오른안들(吏文2, 吏大), 업스론안들(吏祿, 儒胥)’로 읽히며, ‘없지

(는) 았은, 없지 아니한'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의미상 형용사이지만 뒤에 爲(爲-)가 연결되기 때문에 부사로 처리한다. 자료에선 '無不冬 爲-'의 구성만 나타난다.

搜挾後入門時面給無不冬爲白昆右良使內如可現露人乙良這這推考罷職 / 搜挾後入門時에 面給이 없지 않아서 위의 내용과 같이 행하게 하다가 現露人은 신속히 推考하여 罷職할 것. (事目 24-)

舉子 試卷割取封彌官亦擅自開閉無不冬爲白置有良尙今後乙良監試官只監封授封彌官毋令擅自開閉 / 舉子試卷의 割取는 封彌官이 마음대로 開閉함이 없지 않았는데, 今後는 監試官이 監封하고 받은 封彌官은 마음대로 開閉하지 못하게 할 것. (事目 45-)

25) 爲先 위선(우선)

'爲先'은 '위선(吏略) 또는 '우선'으로 읽히며, '우선, 먼저'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한자어로 볼 수도 있는데, 《吏讀略解》에서 이두목록에 포함시켰기에 이두부사로 처리한다.

四館段榜目來付後司憲府本曹糾擧前爲先一會圖議詳加糾摘報本曹 / 四館은 榜目이 來付後에 司憲府 本曹가 糾擧하기 전에 먼저 一會圖議하고 詳加 糾摘하여 本曹에 보고할 것. (事目 27-)

26) 使不得 브리모달

'使不得'은 '브리모달, 브리몬실' 정도로 읽을 수 있으며, '하지 못(하다), 쓰지 못(하다), 행하지 못(하다), 시키지 못(하다)'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使브리'와 '不得/모달'의 결합형이 '使不得'인데, 이 경우 '使'를 동사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使不得~爲-'의 구성으로 보아 이두부사로 처리한다.

今後吏胥貢生雜類非當身赴學者一切痛禁使不得滲入爲白平矣 / 今後에는 吏胥 貢生 雜類가 아닌 赴學 당사자는 一切 痛禁(嚴禁)하여 滲入을 하지 못하게 하오되. (事目 24-)

場中使令等乙令監試官前一日搜檢入場爲白平矣搜挾官外使不得出入 / 場中使令들을 監試官으로 하여금 하루 전날 搜檢케 하여 入場하오되 搜挾官 외에는 출입을 못하게 할 것. (事目 35-)

27) 餘良 나마

‘餘良’은 ‘남아, 나마’로 읽히며, ‘이외에, (어떤 것에) 더하여, -에 더하여’ 정도의 뜻을 나타낸다. 주로 ‘是沙-, 爲沙-’에 이어지는데, 이 때문에 ‘-沙餘良’을 어미로 취급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문맥해석을 중시하고 ‘是沙, 爲沙’와 ‘餘良’을 분리하여 ‘餘良’을 부사로 다룬다. 爲白沙餘良/호습사남아(事目 43ㄱ) 등.

外別 慶尙 全羅地 廣處 乙良 都會 各四館 其餘道里 不遠 爲白在京畿 清洪道 是白沙餘良 合道 試取 爲白在江原 黃海 咸鏡 平安 等道 乙良 都會 二三官 量定 / 지방, 곧 慶尙 全羅 등의 廣處는 都會의 各四館에서, 그 나머지 멀지 않은 京畿 清洪도이외에 合道하여 試取하는 江原 黃海 咸鏡 平安 등의 道는 都會 二三官에서 量定한다. (事目 8ㄱ)

陳省 成給守令 是白沙餘良 試官 入門官 等乙 並只推考 啓聞 罷黜 / 陳省 狀을 成給한 守令 이외에 試官 入門官들을 모두 推考하여 啓聞하고 罷黜한다. (事目 22ㄱ)

四館 書吏 使令 丘史 等潛持 書冊 人 是白沙餘良 四館 官員 只交親 儒生 等 矣 請囑 聽從 書冊 潛給 者 乙 這道 執提 傳報 法司 爲白乎 迹 / 四館의 書吏 使令 丘史 등 潛持 書冊 人 이외에 四館 官員이 交親 儒生들의 請囑을 聽從하여 書冊을 潛給한 사람을 신속히 執提하여 法司에 傳報하오며. (事目 30ㄱ)

4. 맺는 말

지금까지 중세국어시기의 이두문 자료인 《科擧事目》과 《詳定科擧規式》에 나오는 副詞類 吏讀의 목록을 작성하고, 중세국어를 바탕으로 그 음상과 의미를 고구하였다. 의미는 문맥 해석상의 의미를 중시하였고, 독음은 중세국어의 한자訓을 주로 참조하였다.

이 이두문을 문맥 중심으로 해독 혹은 해석하면서 부사류 이두를 정리하고 과거 잘못 해독한 몇 개의 형태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정된 문맥에서 쓰인 것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음독이나 의미 추정에 있어서 무리한 것들도 있었다. 특히 ‘使不得’의 경우에 ‘使’는 동사어간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使不得’ 전체를 부사로 처리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是白沙, 爲白沙’에 이어지는 ‘餘良’도 마찬가지로 본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乙用良’의 경우도 문맥해석상 특수조사로 다루어야 할 경우도 있고, ‘用良’을 분리하여 동사로 다루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많은 자료를 모아놓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두표기 자체가 불완전한 표기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품사분류의 어려움은 계속 존재하리라 본다. 이두연구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이 시기의 많은 이두문을 해독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이두의 형태를 정리하고, 독법과 의미를 정밀하게 정리하면 분명 고대국어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중세국어시기 이후의 公私文書에 쓰이는 이두문의 양식, 이두의 형태와 의미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던 명사류 이두, 동사류 이두, 어미류 이두는 정리 중에 있으며, 글이 완성되는대로 다른 곳에서 발표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던 부사류 이두의 형태를 정리하고, 대표적인 독음과 의미를 다음에 정리하면서 이 글을 끝맺는다.

須只/모름즉(모름지기), 新反/시로이(오히려), 更良/가시아(다시), 不冬/안돌(아니), 不嘯/안디(아니라), 貌如/좃다(그대로), 右良/이미여(위의 내용과 같이), 追乎/조초(따라서), 并以/아오로(아울러), 並只/다모기(모두), 必于/비록(비록), 尤于/더욱(더욱), 惠伊/저즈리(두루), 前亦/전여(우선), 初亦/초여(처음에), 至亦/니르혀(이르기까지), 絃如/시우려(계속하여), 不得/모달(못), 這這/근곤(급히), 次第/차계로(차례로), 乙仍于/을지즈루(-오로 因하여), 爲等如/흐트러(똥들어), 無亦/업스여(없이), 無不冬/업스론안돌(없지 않은), 爲先/위선(우선), 使不得/브리모달(하지 못), 餘良/나마(나머지로서) 등.

참고문헌

- 고정의(1992), “大明律直解의 吏讀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 남풍현(1980), “借字表記의 用字法에 대하여”, 난정남광우박사화갑기념논총
- 남풍현(1992), “古文書의 吏讀 解讀 - 柳璣功臣錄卷을 중심으로 -”, 《정신문화연구》제 15권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희숙(1984), “大明律直解의 吏讀研究”,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 안병희(1987), 《吏文과 吏文大師》, 탐출판사
- 오창명(1992), “《濟州啓錄》의 吏讀文과 吏讀에 대한 研究”, 《濟州島史研究》제2집, 제주도사연구회
- 오창명(1993), “《閔文忠公奏議》의 吏讀研究”, 《語文學論叢》(勤齋梁淳熙博士華甲紀念), 학문사
- 이승재(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 이철수(1989), 《養蠶經驗撮要의 吏讀研究》, 인하대출판부
-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4. 옛말과 이두), 어문각
- 한상인(1993), “大明律直解 吏讀의 語學的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